

# 생물안전위원회 규정

**제 1 조(목적)** 이 규정은 수원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에서 「전염병예방법」 제 5 조의 2 와 관련 「고위험병원체검사·이동 및 폐기 등에 관한 안전관리 규정」과 「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」에 따른 생물안전관리 등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생물안전위원회(IBC: Institutional Biosafety Committee, 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고, 그 구성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 2 조(정의)**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위해가능 생물체: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병원체로 알려진 생물학적 원인체 (미생물, 바이러스, 바이로이드 등)
2. 유전자변형생물체: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얻어진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
3. 위해성 평가: 특정 조건에서 위험원에 노출 시 인간 및 환경에게 일어날 수 있는 악영향 및 그 가능성 그리고 수반되는 불확실성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것
4. 고위험병원체: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염병병원체로서 법령이 정하는 것

**제 3 조(적용범위)** 고위험병원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등 위해가능 생물체의 위해성 평가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「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」 「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」 및 「동법 통합고시」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**제 4 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한다.

1. 교내 생물 관련 실험, 유전자재조합실험 및 2·3 등급 이상 병원체 이용 실험의 생물안전성에 대한 위해성 평가 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
2. 연구계획서 또는 실험계획서의 생물안전 적절성과 안전관리 확보에 관한 사항
3. 고위험병원체 등 병원체안전관리에 관한 제반사항
4. 생물안전 교육·훈련에 관한 사항
5. 기타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에 명시된 기관 내 생물안전위원회의 역할 수행

**제 5 조(구성)** ①위원회는 5인 이상 15인 미만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내외부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②위원장은 호선에 의한다.

③위원회는 생물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둘 수 있다.

④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
**제 6 조(운영)**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의장을 지명할 수 있다.

③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관계자의 출석과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④위원장은 사안별로 소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, 자문위원회 위원은 교내외 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

**제 7 조(회의)**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,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시 또는 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.

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의결이 필요한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소위원회나 자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 8 조(행정사무)** 총장은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지원하는 행정간사를 지정하여 행정 및 재정을 관리할 수 있다.

**제 9 조(비밀유지)**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및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 10 조(위원회 수당)** 위원회는 위원 및 초청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 수당, 자문료 및 심의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**제 11 조(기타)**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[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] 및 「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」에 따르거나, 일반적 관례 혹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 부칙

(시행일) 이 제정 규정은 2014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